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48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소병훈·이병진·김영진
강득구·윤준병·윤종오
허성무·박상혁·박용갑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및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의 5개 질환 이외에 치매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조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법률 제 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마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신부전증

바. 심부전증

사. 치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 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6. ----- ----- ----- -----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u>마. 신부전증</u>
<신 설>	<u>바. 심부전증</u>
<신 설>	<u>사. 치매</u>
<u>마.</u> (생 략)	<u>아.</u> (현행 마목과 같음)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